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2025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21인	2인
재적임원	20인	1인
참석임원	15인	1인

1. **일사:** 2025년 12월 18일(목) 11:00~12: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12월 10일)

2. **장소:** 목원대학교 본부 4층 도익서홀

□ **기도회:** 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98장을 부르고 임광순 이사가 기도한 후 기도회를 마침.

□ **임원점명:** 임광순 서기 이사가 임원을 점명하니 재적임원 21인 중 16인 참석함.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이사(15인): 이철 유영완 이희학 강판중 김양건 박준선 장재홍 김규태 김정수 오종탁
여두홍 이찬우 임광순 (원격화상회의 참석: 서길원 지태열)

감사(1인): 강민구

• 불참 임원

이사(5인): 박인호 우광성 이영태 이요한 이웅천

□ **개회선언:** 이사장이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

□ **이사장 인사:** 이사장이 일어서서 이사, 감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함.

<간서명> 여 두 홍 강 판 중 임 광 순

□ 총장 보고: 총장이 배포한 총장업무보고(별첨)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함.

□ 회순통과: 이사장이 회의 순서를 물어보니 회의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동의받아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의결함.

□ 각 위원회 보고: 1, 2호안은 규정소위원회 위원인 강판중 이사가 설명함. 1호안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중 정관 제65조(징계의결) 제5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이사장이 통고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리오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적 정정 수단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이사장이 징계의결서에 대한 재검토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신설함을 설명함.

법인 정관 제43조(임면), 제92조(하부조직), 제94조(부속시설) 및 직제규정 제4조(총장직속), 제13조(기획예산처), 제19조(보직교원)는 신입생 감소와 대학 재정 효율화 전략에 따라 인력과 재정의 슬림화가 필요하며, 미래전략본부의 핵심 업무인 대학발전계획, 대학기관인증 평가 및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한 업무를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여 대학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같은 규정 제17조(총무처)는 부속시설에 전산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시스템·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력 및 예산을 독립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법인정관 및 규정(법인정관, 직제규정) 개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보고함.

6, 7호안은 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인 김정수 이사가 배포한 교원임용자료(별첨)와 함께 설명함. 6호안 교원 임용의 건은 2026학년도 1학기 교원 재임용(총 28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보고함. 다만, 신학과, 교목실 소속 교원은 신앙생활 및 교회봉사와 관련된 서류를 향후 이사회 상정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로 통보하기로 함. 7호안은 교원 징계에 관한 건으로 상정된 해당 교원은 인권센터 내에 양성교육 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사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함.

8, 9호안은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 위원인 김규태 이사가 배포한 자료(별첨)와 함께 설명함. 8호안 교육용기본재산(양궁장) 취득에 관한 건은 도안동 산 34-1번지 토지에 대하여 우리 법인과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지분 중, 우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법인이 매입하는 안에 관한 사항임. 해당 토지는 현재 양궁장 부지로 사용 중으로 토지 소유자 중 서강 법인 측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법인이 다

<간서명>	여두홍	강판중	임광순
-------	-----	-----	-----

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매입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통지받았음.

현재 지분 비율은 우리 법인 약 38%, 법인 외 개인 2인 약 62%이며, 이에 따른 매입 금액은 총 약 1억 6천4백만 원으로 평당 약 100만 원 수준임. 해당 부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궁장으로 계속 사용 중이므로, 향후 무단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이의 제기 및 분쟁 발생 우려가 있어, 소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함.

9호 안전인 목원스포츠센터 부지 매립 폐기물 해결 방안에 관한 건은 2021년 12월 15일 매각한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 과정 중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사안임. 이에 매수인은 202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당초 덤프트럭 약 1,184대 분량으로 약 8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 공정률 약 43% 진행 시점에서 실제 처리된 폐기물은 덤프트럭 약 21대 분량에 불과하여, 최초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법인은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최종 처리 비용이 1억 원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매립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수인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후 우리 법인에 정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함.

□ 전 이사회회의록 통과: 이사장이 전 이사회회의록 통과에 대하여 물으니 전 이사회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의결함.

4. 회의 안건

- 가. 제 1호의 안: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나. 제 2호의 안: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 다. 제 3호의 안: 임원(감사) 선임 임기변경에 관한 건(2025학년도 제4차 의결 안건)
- 라. 제 4호의 안: 임원(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건
- 마. 제 5호의 안: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
- 바. 제 6호의 안: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사. 제 7호의 안: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아. 제 8호의 안: 교육용 기본재산(양궁장) 취득에 관한 건
- 자. 제 9호의 안: 목원스포츠센터 부지 매립 폐기물 해결 방안의 건

5. 보고 안건

- 가. 제 1호의 안: 기타보고에 관한 건

<간서명>	여	두홍	강	관중	임	광순
-------	---	----	---	----	---	----

6. 안건 심의

제 1호의 안: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법인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규정소위원회로부터 이상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김규태 이사는 정관 제65조 제5항 중 ‘~판단하는 경우에는’ 을 ‘~판단하는 경우’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이에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첨부1)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 2호의 안: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학교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규정소위원회로부터 이상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원안(첨부2)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 3호의 안: 임원(감사) 선임 임기변경에 관한 건(2025학년도 제4차 의결 안건)

오수철 법인사무국장이 2025학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한 성요한 감사가 외국 국적자(미국)로 교육부 제출서류 중 해외 발급 서류가 감사의 임기 개시일(2025년 11월 26일부터)까지 도착하지 않아 교육부 승인 일정을 감안, 개방 감사의 임기와 같이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로 임기를 변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4호의 안: 임원(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건

오수철 법인사무국장이 임원(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건은 법인 정관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민구 감사의 후임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정관 제24조의4(개방감사의 선임) 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요청하였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구연웅 후보자를 개방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보고함.

이사장이 구연웅 후보자를 선임(임기: 2026.1.28.~2028.1.27.(2년))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제 5호의 안: 총장후보자 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건

오수철 법인사무국장이 법인 정관 제43조(임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설명함.

<간서명>	여	두홍	강	관중	임광순
-------	---	----	---	----	-----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중 법인이사 5명의 선임을 위임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6호의 안: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이사장이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은 교원인사소위원회로부터 이상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심의의결 내용인 2026학년도 1학기 교원 재임용 대상자 28명에 대하여 원안(첨부3)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7호의 안: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이사장이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은 교원인사소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교수 징계의결을 승인하며 교원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 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8호의 안: 교육용 기본재산(양궁장) 취득에 관한 건

이사장이 교육용 기본재산(양궁장) 취득에 관한 건은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제 9호의 안: 목원스포츠센터 부지 매립 폐기물 해결 방안의 건

이사장이 목원스포츠센터 부지 매립 폐기물 해결 방안에 관한 건은 기획 및 자산소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함.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묻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같이 의결함.

7. 보고 사항

제 1호의 안: 기타보고에 관한 건

더 이상 보고할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마침.

□ 간서명위원 선출의 건

이사장이 회의록의 간서명을 위한 간서명 위원 3명은 이사장에게 위임해줄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사들의 동의로 이사장은 여두홍 이사, 강관중 이사, 임광순 이사를 간서명 위원으로 선정함.

<간서명>	여 두 홍	강 관 중	임 광 순
-------	-------	-------	-------

□ 폐 회

오종탁 이사의 폐회 동의와 여두홍 이사의 재청이 가납되어 폐회함.

2025년 12월 18일

이사장 이 철 이 철
이 사 임광순 임 광순
이 사 이희학 이 희 학
이 사 유명완 유 명 완
이 사 박준선 박 준 선
이 사 장재홍 장 재 홍
이 사 김양건 김 양 건
이 사 김규태 김 규 태
이 사 김정수 김 정 수
이 사 이찬우 이 찬 우
이 사 오종탁 오 종 탁

<간서명>	여	두	홍	강	관	중	임	광	순
-------	---	---	---	---	---	---	---	---	---

이 사 여두홍 여 두홍

이 사 강판중 강판중

감 사 강민구 강민구

(영상참석) 이 사 지태열 지태열

(영상참석) 이 사 서길원 서길원

<간서명>	여 두홍	강 판중	임 광순
-------	------	------	------